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9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. 3. 9.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당연직은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‘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’으로 한 안 제5조제3항 단서를 직위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발간한 「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(2022)」는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‘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’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4급 이상 공무원은”을 “과장은”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3항 단서).
- 나.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제4항 단서).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3항 단서 중 “4급 이상 공무원은”을 “과장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”를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임기·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</p>	<p>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<u>해촉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----- ----- --.</p> <p>⑤ ~ ⑦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
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
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
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임기·해촉”을 “해촉”으로 한다.

1. 문화유산·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
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<u>임기·해촉</u>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시 문화유산활용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문화유산·주택 등 풍납토성 관련업무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</u></p> <p>2. ~ 6. (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·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 <u>해촉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